

제13장 정부조달

제13.1조 일반 규정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 증진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 및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조달 사안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경쟁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투명성, 비용대비 가치, 공개적이고 효과적인 경쟁, 공정한 거래, 책임성 및 정당한 법 절차와 비차별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정부조달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정부조달 수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이하 “CPC” 라 한다) 제51 대분류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3-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공표란 널리 배포되고 일반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또는 서면 매체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13.3조 적용범위

협정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를 불문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 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 1)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것, 그리고
 -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와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이 조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제13.11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부속서 13-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 협정, 공여, 용자, 지분참여, 보증 그리고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용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 라. 공공고용 계약, 또는
-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 1)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
 - 2)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는
 - 3)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것

4. 적용대상 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부속서 13-가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3.4조를 그러한 요건에 준용한다.

가액산정

- 5. 적용대상 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 2) 그 조달이 선택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의 총 가액

6.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 (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최대 총 추정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다음 12개월에 걸쳐 조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이나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나. 최초 낙찰 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월 추정분할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또는

다.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인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호가 적용된다.

제13.4조 일반원칙

비차별

1.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 이용

- 3.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 4. 조달기관은 적용대상 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 5. 적용대상 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

- 6.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
- 나.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는
- 다.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그 밖의 수입 규정이나 절차 및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제13.5조 이 장에 대한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3.6조 정보의 공개

양 당사국에 대한 정보제공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공평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해당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그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특정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¹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 나.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3.7조 조달 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각 당사국은 신속하게 다음을 공표한다.

- 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 그리고
- 나. 원래의 공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수정사항

제13.8조 공급자 자격심사

¹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뉴질랜드에게 1982년 「공공정보법」 또는 그 후속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조달기관들이 그들의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 나. 조달기관들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들의 등록제도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한쪽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자국의 조달에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 가. 조달예정 공고에 적어도 제13.11조제2항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및 카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 나. 해당 기관이 제13.12조제4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유자격 공급자에게 적어도 제13.11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에 명시된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4항에서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모든 유자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7. 조달기관은 공급자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관심 있는 공급자가 해당 명부에 등재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는,

가.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계속해서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 부속서 13-가에 열거된 적절한 매체에 공표되어야 한다.

8. 제7항에서 규정된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만족시켜야 하는 참여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게 될 경우, 조달기관은 제7항에서 언급된 공고를 해당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고가

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3.1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다. 해당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자를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다.

조달기관의 결정에 관한 정보

12.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해당 요청 또는 신청과 관련된 해당 조달기관의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한다.

13.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해당 공급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해당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3.9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수준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 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4.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파산
- 나. 허위신고
-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 바. 세금 미납

제13.10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조항을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제13.8조, 제13.9조, 제13.11조, 제13.12조, 제13.14조 및 제13.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입찰서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
-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하여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허,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관련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는 경우.

2. 조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제13.11조 공고

조달예정 공고

1. 각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13.10조에 기술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매체는 널리 유포되고, 그러한 공고는 적어도 해당 공고에 적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고는 부속서 13-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을 위하여 수립된 전체 기간 동안 하나의 접근 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다.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 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라.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

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바.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교섭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사. 적용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자.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차. 공급자가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 카. 조달기관이 제13.8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요약공고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영어로 공표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의 대상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조달계획 공고

4. 조달기관은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 공고”라 한다)를 각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해당 조달계획 공고는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 예정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제13.12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 나.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2. 해당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관심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하다.

마감시한

3.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될 수 있다.

4.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5.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3.11조제4항에 기술된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 공표보다 적어도 40일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하로 미리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 그 조달내용에 대한 기술
- 2)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문안
- 4) 조달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 5) 제13.11조제2항에 따른 조달예정 공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확보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 나. 반복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기간을 후속 공고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 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또는
 -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6. 조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설정한 입찰 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 다. 해당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7. 제5항과 연계하여 제6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설정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와 입찰서류 모두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제13.13조 기술규격

1. 조달기관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제13.14조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조달예정 공고에서 이미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해당 조달 및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 다. 해당 기관이 계약의 낙찰에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 마.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 바.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 사.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2.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정도 및 공급 지점으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3.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특히 가격 및 그 밖의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4. 조달기관은 신속하게,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응찰서를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서류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 다.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정

5. 조달기관이 낙찰 전에 조달예정 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13.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조달기관이 제출된 다른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사용하거나,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3.16조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참가한 공급자에게 조달기관의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6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낙찰 정보의 공표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조달기관은 부속서 13-가에 기재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해당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 라. 낙찰금액 또는 낙찰에 있어서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 마. 낙찰일, 그리고
- 바. 사용된 조달 방법의 종류, 그리고 제13.10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서류, 보고서 및 전자적 추적 가능성의 유지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 가. 제13.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 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13.17조 공급자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 심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 장의 조치 이행 위반 주장과 관련된 공급자의 이의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하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급자가 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조달의 맥락에서 조달에 관한 조달 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취하거나 검토할 권한이 있는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이의제기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13.18조 조달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이용

1. 양 당사국은 실시 예정인 정부 조달에 대한 기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에 따라 자국의 공급자를 위한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조달 공급 기회에 관한 통합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단일 전자 포털을 유지하고, 정부 조달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되거나 단일 전자 포털에 기재된 정보에 제시된다.

3.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입찰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서를 접수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조달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가 채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허가받지 아니한 그리고 은밀한 변경으로부터 서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의 네트워크상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의 예시적 조달계획에 관한 정보를 그 기관이 회계연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제2항에 언급된 전자적 포탈에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13.19조 부속서의 개정, 수정 및 정정

1. 한쪽 당사국이 부속서-13가에 대한 경미한 정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그 밖의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정정 또는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2. 기업화와 상업화 또는 민영화의 결과로, 한쪽 당사국이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유로 부속서 13-가의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제안된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3.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또는 정정 제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 또는 정정 제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당사국에게 자국의 이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시킨다.

4. 양 당사국은 기술적 협의를 통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는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기술된 것 외의 사유로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상조정을 제공한다. 제안된 개정은 제21.4조(개정)에 따라 발효된다.

6. 공동위원회는 결정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발효된 개정, 수정 또는 정정을 반영하여 부속서 13-가를 갱신한다.